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30 선고 2018가단348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4. 16.

판결 선고2018. 4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. 12. 11.부터 2008. 1. 10.까지는 연 25%의, 2008. 1. 11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심병직

별지